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5476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4.

주 문

- 피고와 B가 2022. 3. 30.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,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7,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민규남